

’94. 第3次 市有財産 變更管理 計劃案

審 査 報 告 書

1994. 10. 22.

내 무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0월 18일 속초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0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
(1994. 10. 22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신부웅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시유재산
취득·처분, 대부, 도로보상, 사용등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
득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취 득 ┌ 토 지 : 31필지 13,093㎡
 └ 건 물 : 2 동 661㎡

○ 매각(처분) : 15필지 1,011㎡

○ 대 부 : 3필지 576㎡

○ 도로보상 : 70필지 23,112㎡

○ 사 용

- 유상사용 : 토지 2필지 2,371㎡ 건물 2동 977㎡

- 무상사용 : 토지 2필지 3,186㎡ 건물 2동 507.85㎡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없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(답변자 : 회계과장 신부웅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폐도를 사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속초교회만 임대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폐도와 관련된 임대방안	○ 속초교회만 신청하였으며, 앞으로 폐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차기회의시 보고
○ 미시로 확장 관련 자투리땅 매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	○ 영세민이 거주하여 이주는 곤란, 미관 저해부분은 발생치 않도록 조치

5. 討論要旨 : 없음

6. 修正案 要旨 : 없음

7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

첨 부 : '94. 제3차 시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부. 끝.